



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

한양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사 : 생명순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□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함.

□ 급여 신청 : 거주지 읍.면 주민센터에 본인 및 친족, 기타 관계인 신청.

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및 경제적 후원 소득 기준

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	(단위 : 원)
								해당 제도 및 후원처
2013년 최저생계비	572,168	974,231	1,260,315	1,546,399	1,832,482	2,118,566	2,404,650	
2014년 최저생계비	603,403	1,027,417	1,329,118	1,630,820	1,932,522	2,535,925	2,535,925	
120% 기준	724,084	1,232,900	1,594,942	1,956,984	2,319,026	3,043,110	3,043,110	차상위계층, 최저생계비 1.2배 ↓
130% 기준	784,424	1,335,642	1,727,853	2,120,066	2,512,279	3,296,703	3,296,703	
150% 기준	905,105	1,541,126	1,993,677	2,446,230	2,898,783	3,803,888	3,803,888	시군구청 긴급지원
160% 기준	965,445	1,643,867	2,126,589	2,609,312	3,092,035	4,057,480	4,057,480	Save the Children
170% 기준	1,025,785	1,746,609	2,259,501	2,772,394	3,285,287	4,311,073	4,311,073	
200% 기준	1,206,806	2,054,834	2,658,236	3,261,640	3,865,044	5,071,850	5,071,850	사회복지 공동모금회 (서사협)
250%기준	1,810,209	3,082,251	3,987,354	4,892,460	5,797,566	7,607,775	7,607,775	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
300% 기준	1,810,209	3,082,251	3,987,354	4,892,460	5,797,566	7,607,775	7,607,775	
400% 기준	2,413,612	4,109,668	5,316,472	6,523,280	7,730,088	10,143,700	10,143,700	
※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: 1인 증가시마다 301,702원씩 증가 (8인가구: 2,837,627원)								

긴급복지 지원제도

- **긴급지원 대상자** :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
- **신청절차** : 보건복지부 콜 센터(**129**) 직접 전화 신청(원자 본인, 가족, 관계인 등)
- **지원종류** : 생계지원, 주거지원(가구 구성원 별 차등), **의료지원(최대300만원)** 등
- **지원기간** : 1개월간 (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소급 적용 가능함)
- **지원예외항목** :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, 증명발급비용, 식대비용(수급자) 등

■ 긴급지원 기준			
구 분	대 도시	중 소 도시	농 어 촌
재 산	13,500만원 ↓	8,500만원 ↓	7,250만원 ↓
금융재산	2014년 300만원 ↓ / 2013년 500만원 ↓		
소득기준	최저생계비 150% 이하		

2014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최저생계비	603,403	1,027,417	1,329,118	1,630,820	1,932,522	2,535,925	2,535,925
150% 기준	905,105	1,541,126	1,993,677	2,446,230	2,898,783	3,803,888	3,803,888

희귀·난치성의료비 & 산정특례 비교

구분	희귀·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	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	비고
등록대상	저소득(차상위) 및 기초생활대상자	경제적 기준에 관계없이 확진 받은 자	희귀·난치성 132종 산정특례 138종
등록장소	관할 보건소	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행 가능한 병원	
지원항목	본인부담금 오염기대여비 간병비	본인부담금	확진 받은 환자 단, 오염기대여비는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본인부담금비율 (급여부분)	0%	10%	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

※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

👉 기간 : 2013. 08. 01 ~ [예산 소진 시까지]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지원대상 질환

암, 심장 및 뇌혈관 질환, 희귀난치성질환, 중증화상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

의료비 지원 범위

법정 본인부담금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 [특실은 제외]

※ 본인부담금 = 법정 본인부담금 + 선택진료비·병실차액 + 기타 비급여
[단, 예방, 성형, 미용, 임의 비급여 등 제외]

👉 **신청방법** : 환자[보호자 또는 대리인]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

👉 **구비서류** :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(공단양식)
가족관계증명서 /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 계산서(영수증) 등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선정기준

유형별 지원대상 의료비 규모

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
저소득 가구 [최저생계비 200% 이하]	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
의료비 과부담 가구 [최저생계비 200%~300%]	본인부담 의료비 연소득대비 10%이상 ※ 의료사회복지사 상담평가서 첨부 별도의 심사 통해 지원 여부 결정

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선정기준

소득 · 재산 기준 [건강보험료 기준]

☞ 최저생계비 200%인 가구 보험료 수준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
직장가입자	33,750원	57,670원	75,110원	91,380원
지역가입자	15,550원	48,990원	78,380원	102,210원

※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

☞ 고액 재산 및 고가 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

(재산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자, 5년 미만의 3,000cc이상 자동차 보유자)

☞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구간별 차등 지원

본인부담액	200~500만원	500~1000만원	1000만원~
지원 비율	50%	60%	70%

※ 지원액 :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합계 금액

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
복지사업

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
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



저출산해소 및
미숙아 지원



기타 지원사업



희귀·난치성질
환자 지원사업



사회적 의인
지원사업



저소득 치매노인
지원사업



자살예방
지원사업



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선정기준

2014년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

(단위 : 원)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최저생계비	603,403	1,027,417	1,329,118	1,630,820	1,932,522	2,234,223	2,535,925
소득인정액 (250%)	1,508,508	2,568,543	3,322,795	4,077,050	4,831,305	5,585,558	6,339,813

2014년 가구별 재산 인정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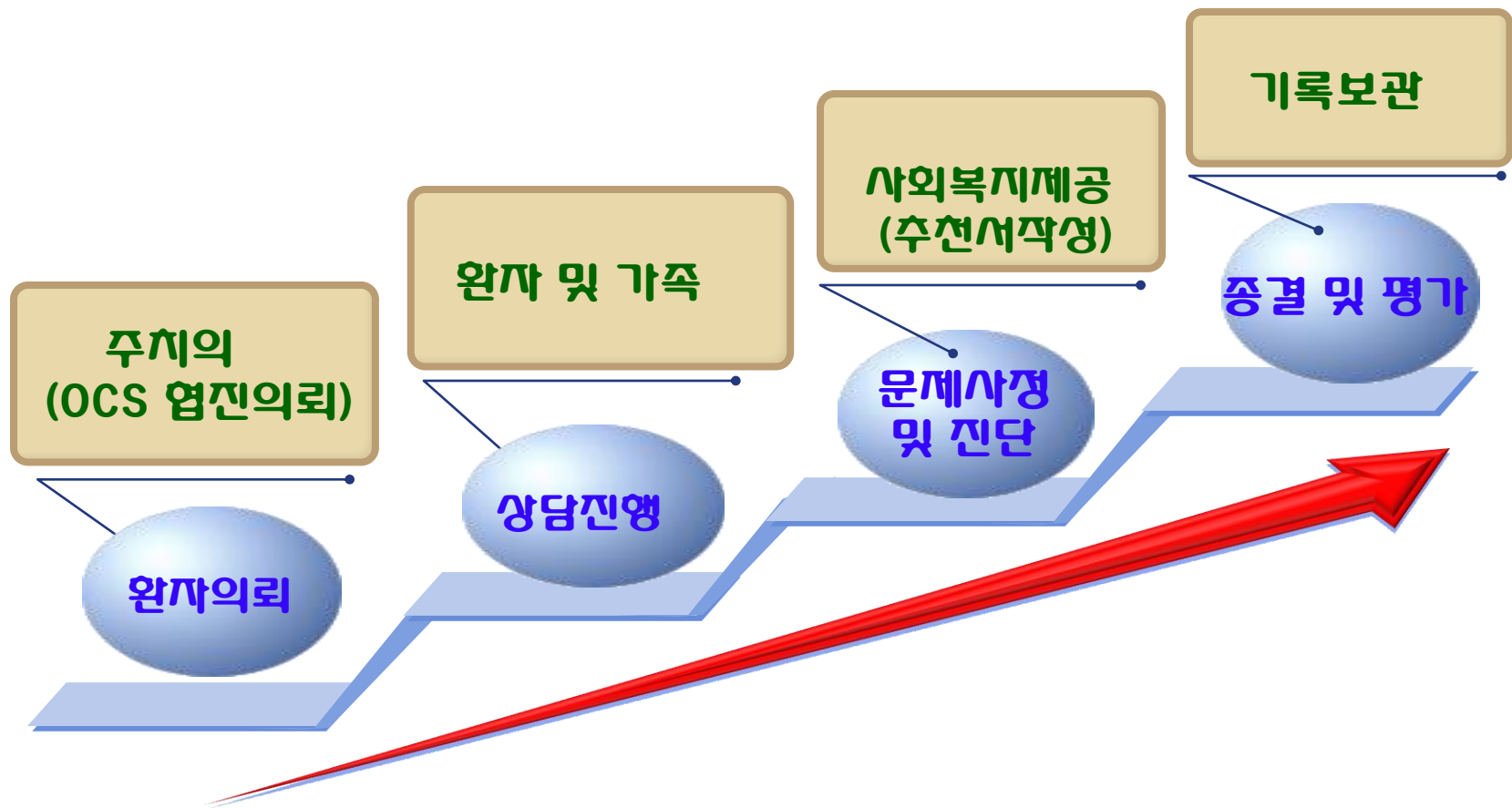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원)

가구규모/지역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최고 재산액	농어촌	43,470,096	52,638,297	60,873,333	68,108,393	75,343,453	82,578,489	89,813,549
	중소도시	48,470,096	58,638,297	60,873,333	68,108,393	75,343,453	82,578,489	89,813,549
	대도시	68,470,096	78,638,297	85,873,333	93,108,393	100,343,453	107,578,489	114,813,549
재산 인정액 (250%)	농어촌	108,675,240	134,095,743	152,183,333	170,270,983	188,358,633	206,446,223	224,533,873
	중소도시	121,175,240	146,595,743	164,683,333	182,770,983	200,858,633	218,946,223	237,033,873
	대도시	171,175,240	196,595,743	214,683,333	232,770,983	250,858,633	268,946,223	287,033,873

* 대도시: 특별시, 광역시의 "구"(도,농 복합군 포함)
 특별시(서울특별시)
 광역시(광주,대구,대전,부산,울산,인천)

* 소도시: 도의 "시"
 * 농어촌: 도의 "군"

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의뢰 절차



감사합니다!!

